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역량중심의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근무평정 확대 적용을 반영한 대통령령 개정('24.12.11.)에 따른 후속조치로, 누락된 시행규칙 상의 평정점 산정 방식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영 일부개정령안 제58조제2항각호에 의해 근무평정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평정점 산정 방식을 개정된 비율에 맞게 개정(안 제52조제3항)

※ (현행) 근무평정 70점 : 평정점 X 1.4 → (개정) 근무평정 80점 : 평정점 X 1.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제 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1.4”를 각각 “1.6”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 및 경력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승진 대상자 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2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 ② (생략) ③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근무 성적 평정점은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1. 총경: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20/100)] × <u>1.4</u> 2. 경정, 경감, 경위 및 경사: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 <u>1.4</u> 3. 경장 및 순경: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u>1.4</u> ④ ~ ⑥ (생략)	제52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 ----- ----- ----- <u>1.6</u> 2. ----- ----- ----- ----- ----- <u>1.6</u> 3. ----- ----- <u>1.6</u> ④ ~ ⑥ (현행과 같음)